



KR
KOREAN REGISTER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24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10 September 2018
Person in charge : Lee Tae-hoon

NO.2018-ETC-05

**제목 : 중국 장강삼각주 ECA 지역 항해 선박에 대한 저유황유 (0.5%)
사용 규정 선 시행 (2018.10.1.~)**

중국 교통운송부에서 발표한 중국 ECA 실시 방안, 세부지침 및 장강삼각주와 선전항의 우선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기술정보 [2015-ETC-12](#), [2016-ETC-1](#), [2016-ETC-2](#), [2016-ETC-05](#) 및 [2017-ETC-08](#)를 통해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ECA 실시 방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ECA 지역 항해하는 선박은 0.5% 이하 황 함유량 연료유 사용이 적용 예정이나, 중국 교통운송부에서는 장강삼각주 ECA 지역에서 동 규정을 3개월 앞당겨 **2018년 10월 1일부터 선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의 적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소개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선주 및 관리 선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하이항 항해 선박에 대한 배출규제 요건

- 1) 본 요건은 상하이항에서 항해, 정박, 작업하는 선박에 적용하며, 군함, Sports 보트와 어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 2018년 10월 1일부터 국제 항해선박과 국내연해 항해선박은 상하이항 내에서 항해 및 정박기간에 황 함유량 0.5% m/m이하인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3) 내하(内河)선박과 강해(江海)직항선박은 요구에 부합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4) 선외수전접속설비를 배치한 선박은 선외수전이 가능한 항구에 정박하는 기간에는 육상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 5) 해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황 함유량 규제에 대한 대체설비에 만족하는 친환경에너지 및 배기가스처리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6) 만약 본 공문에서 요구하는 저유황유를 사용하였을 때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요구에 부합되는 저유황유를 수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 측은 사전에 해사청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7) 본 공문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함.

2. 장수성 내 장강삼각주 핵심 항구에 대한 황함유량 규제

- 1) 2018년 10월 1일 부터 장강삼각주 내 쑤저우 및 난퉁항의 ECA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5000 mg/kg 이하인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2) 2018년 10월 1일 부터 선박은 육상전원 사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 3)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 까지 소주, 난퉁 및 상주의 항구에서는 터미널 및 선박에 육상전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육상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 4) 선박은 청정 에너지 및 스크러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배출관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대안을 사용할 수 있다.

2. 저장성 내 핵심 항구에 대한 황함유량 규제

- 1) 2018년 10월 1일 부터 닝보 저우산 항을 목적지로 항해하는 선박은 장강 삼각주 ECA에서 황 함유량 0.5% m/m이하인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 2) 2018년 10월 1일 부터 선박은 육상전원 사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 3)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 까지 가흥 항에서 육상전원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선박은 원칙적으로 육상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 4) 선박은 청정 에너지 및 스크러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배출관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대안을 사용할 수 있다.

첨부 : 중국 해사청 발표 자료 - 끝 -

협 약 본 부 장



배부처 : 선주 및 선박관리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